

직업으로 '잠녀', 정년은?

50대 잠녀, 실신 유발 모터보트 회사 상대 손해배상서 '정년 70세' 주장
고령화 추세·판례상 '왕성한 활동'기준 등 쟁점…직업가치 평가 의미도

등록 : 2008년 08월 18일 (월) 14:50:48
최종수정 : 2008년 08월 18일 (월) 14:50:48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는 잠녀의 직업 가치는 몇 살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

최근 작업 중 모터보트의 급물살 충격으로 실신한 이후 '물질'을 하지 못하고 있는 50대 잠녀가 모터보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년 만 70세'를 주장, 법원의 인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귀포 지역에서 물질로 생계를 꾸려온 A씨(53·여)는 최근 모 수상레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1월 잠수 후 물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모터보트가 일으킨 급물살로 많은 양의 바닷물을 한꺼번에 마시면서 실신했다 동료들에 의해 간신히 구조됐다.

하지만 바다에 의존해 살아온 A씨는 사고후 6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바다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불안감과 공포감, 불면증 등으로 계속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했다.

A씨는 소장에서 "(잠녀가 직업 중이라는 표시인) 태워(부표)를 띄워놓은 지점을 모터보트가 운항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만일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만70세까지 일 할 수 있었지만 사고를 당한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일실수익 1000만원과 함께 치료비 500만원, 위자료 100만원 등 상대 수상레저회사는 모두 25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발생했던 여성 패션모델 사망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년은 만 60세'라는 피해자 부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모델협회에 등록된 여성 모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여성모델의 약 94%가 30대 이하이고, 여성 패션모델의 경우 30대 중반까지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만 35세까지를 정년으로 판단했던 예가 있다. 당시 사건은 별다른 정년 기준이 없는 패션모델에 대한 정년 인정여부를 놓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었다.

A씨 역시 직업으로서 '잠녀' 정년이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왕성한 활동'이 기준이 될 가능성성이 많은 등 향후 법원이 잠녀의 정년을 몇 살까지 인정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